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08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백혜련 · 조계원 · 서영석
이원택 · 용혜인 · 전진숙
남인순 · 진선미 · 이수진
김 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서면”을 “서면(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면”을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서면(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